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1

(2015. 10. 2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10월 16일
-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9일

4. 관계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6조, 제34조, 제42조, 제81조제4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지방재정법」 제67조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관련된 사항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 강화(안 제3조)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추가하여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나.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안 제3조의2 ～ 제3조의3)

- 재심의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10조)

- 관리계획 구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하는 규정 신설

라.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안 제30조)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대상 변경

(전년도 대비 10%이상 초과상승분 => 5%이상 초과상승분)

마. 변상금 징수유예 규정 신설(안 제87조의2)

-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 변상금 징수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함

바. 기타 조례의 미비점 보완

- 조례 해석 및 적용 시 혼란 방지를 위해 법 제27조 개정사항 반영 (안 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15.7.1)으로 관련급여 중 대상자를 제1호 및 제4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선택 (안 제25조제3항, 제34조제1항3호)

- 지방재정법 제67조에 따라 경리관 => 재무관, 분임경리관=> 분임재무관으로 변경함(안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70조)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각각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내용 중 일부를 공유 재산심의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 료 감액률을 변경하였으며, 변상금 징수유예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재정 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1.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 하는 등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
 - 가) 심의회 구성
 - 1) 구성인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
 - 2) 위원장 : 기획경제국장 => 부구청장
 - 3) 위원자격 : 구청 과장중 구청장이 임명 => 마포구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민간위원
 - 4) 민간위원 인원수 :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
 - 5) 민간위원의 임기 : 2년, 한차례만 연임
 - 나)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
 -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수의계약에 따른 재산의 매각 가격 심사결정」 조항을 개정조례안 제3조의2 제1항제3호로 변경하 면서 빈번한 심의회 개최를 억제하기 위해 「영 시행령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매각」 하는 경우 로 변경

- 2)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와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재심의 하도록 개정조례 제3조의2 제1항제6호에 신설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 제3조의2 제2항제4호라목 신설
 - 4) 심의회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이해 당사자인 경우나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는 해당위원을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조례안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신설
2.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여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갈등해소
- 가) 자치단체와 구의회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계획 구의회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명확히 하는 규정을 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에 신설

3. 사용료 및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음.

- 가)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1)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에 의거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조례안 제30조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대상을 전년도 대비 10%이상 초과상승분에서 5%이상 초과상승분으로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사용료 등의 상승률 완화

나) 변상금 징수유예 규정 신설

1)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41항에 의거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 변상금 징수유예기간을 법정 최장기간인 1년으로 정하는 조례 개정안 제87조의2 조항을 신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일부를 선택하여 개정

가) 개정조례안 제25조 3항 및 제34조 1항3호는 2015.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대상자를 제1호 및 제4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택

5. 기타 조례의 미비점 보완

가)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개정사항을 반영=> 안 제20조1항, 4항, 5항

나) 「지방재정법」 제67조에 의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변경=> 안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70조

○ 동(同) 조례안은 2015.8.27.~9.16.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 1)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기획경제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하고 민간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으며,
- 2)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명확하게 하였고,
- 3)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이상 초과상승분에서 5% 이상 초과상승분으로 조정하였으며,

- 4)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였고,
- 5)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는 등 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타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새로 개정된 상위법에 적합하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17호, 2015.1.20., 일부개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 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8.17.] [대통령령 제26103호, 2015.2.16., 일부개정]

-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42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의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81조(변상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3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產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6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